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서

(김지향 의원 발의)

-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입니다.

-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98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를 함께한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 서울아리수본부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4조(독립채산)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 담당부서인 복지실에서 예산편성 총괄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과 감면대상, 내용, 예산 관련 협의를 반드시 선행한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2020년 독립유공자 수도요금 감면 시행 당시 복지실에서는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 보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이후 2023년까지 재정 보전을 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재정 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24년 결산 기준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88% 수준으로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감면대상이 독립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 확대될 경우 감면금액이 대폭 증가하므로 상수도의 재정부담 없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반드시 부서 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